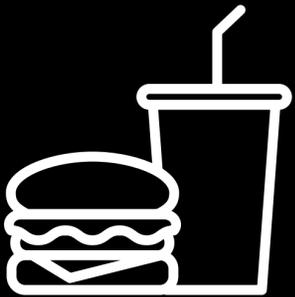


# NYC 공정

# 근로주법

# 패스트푸드점

# 근로자 보호



법에 따르면, 근로자는 주간 정기 일정을 전달받고, 일정 변경 시 추가 수당과 새 근로 시간에 따라 우선적으로 일할 권리를 받아야 하며, 불법적인 해고, 인원 감축 또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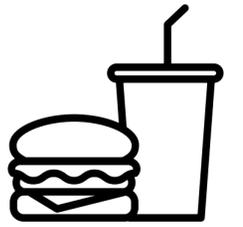
자세히 알아보거나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[nyc.gov/workers](https://nyc.gov/workers) 을 방문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한 다음 “Fair Workweek”(공정 근로주)이라고 말하십시오.

**NYC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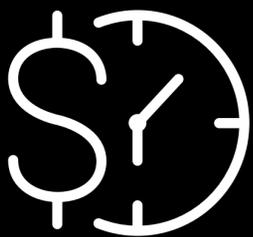
Eric L. Adams  
Mayor

**Consumer and  
Worker Protection**

Vilda Vera Mayuga  
Commissioner



# 패스트푸드점 근로자 일정 변경 시 추가 수당 받기



NYC 공정 근로주법에 따르면, 근로자는 고용주가 14일 미만 통지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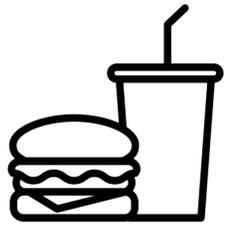
자세히 알아보거나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[nyc.gov/workers](https://nyc.gov/workers) 을 방문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한 다음 “Fair Workweek”(공정 근로주)이라고 말하십시오.

**NYC**

Eric L. Adams  
Mayor

Consumer and  
Worker Protection

Vilda Vera Mayuga  
Commission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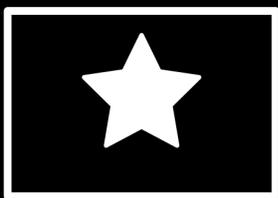
# 패스트푸드점

# 근로자

# 새 근로 시간에

# 따라 우선적으로

# 일할 권리



NYC 공정 근로주법에 따르면, 인원 감축에 따라 해고되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새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새롭게 마련된 근로 시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우선적인 권한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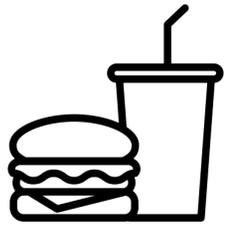
자세히 알아보거나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[nyc.gov/workers](https://nyc.gov/workers) 을 방문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한 다음 “Fair Workweek”(공정 근로주)이라고 말하십시오.

**NYC**

Eric L. Adams  
Mayor

Consumer and  
Worker Protection

Vilda Vera Mayuga  
Commissioner



# 패스트푸드점

# 고용주

# 정당한 이유 없이

# 근로자 해고 금지



NYC 공정 근로주법에 따르면, 고용주는 수습 기간이 지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인 재정 고충의 근거 없이 해고하거나 인원 감축을 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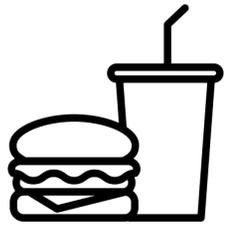
자세히 알아보거나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[nyc.gov/workers](https://nyc.gov/workers) 을 방문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한 다음 “Fair Workweek”(공정 근로주)이라고 말하십시오.

**NYC**

Eric L. Adams  
Mayor

Consumer and  
Worker Protection

Vilda Vera Mayuga  
Commission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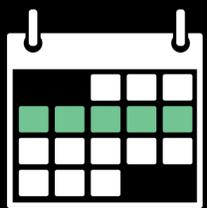


# 패스트푸드점

# 근로자

# 정기적인 주간

# 일정 받기



NYC 공정 근로주법에 따르면, 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로 시간을 확보할  
있는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인 재정 고충의 근거  
없이 근로 시간을 15% 넘게 축소할 수 없습니다.

자세히 알아보거나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[nyc.gov/workers](https://nyc.gov/workers) 을 방문하거나  
**311** 번으로 전화한 다음 “Fair Workweek”(공정 근로주)이라고 말하십시오.

**NYC**

Eric L. Adams  
Mayor

Consumer and  
Worker Protection

Vilda Vera Mayuga  
Commissioner

# NYC 공정

# 근로주법

# 소매업 고용인

# 보호



법에 따르면, 근로자는 첫 근로 시간의 72시간 전에 주간 근로 일정을 전달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 시간 직전에 일정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.

자세히 알아보거나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[nyc.gov/workers](https://nyc.gov/workers) 을 방문하거나 311 번으로 전화한 다음 “Fair Workweek”(공정 근로주)이라고 말하십시오.

**NYC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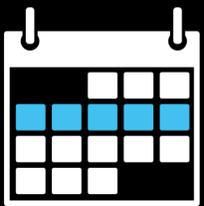
Eric L. Adams  
Mayor

**Consumer and  
Worker Protection**

Vilda Vera Mayuga  
Commissioner



# 소매업 고용주 근로 시간 직전 일정 변경 불가



NYC 공정 근로주법에 따르면, 고용주는 72시간 미만 통지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추가,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자세히 알아보거나 불만 사항을 신고하려면 [nyc.gov/workers](https://nyc.gov/workers) 을 방문하거나 **311** 번으로 전화한 다음 “Fair Workweek”(공정 근로주)이라고 말하십시오.

**NYC**

Eric L. Adams  
Mayor

Consumer and  
Worker Protection

Vilda Vera Mayuga  
Commissioner